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034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034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3나202958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1가합1520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용인시

판결 선고 2016. 5. 2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3나20295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나 의사표시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행정행위나 의사표시 또는 그 전제가 된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행위 등의 문언의 내용과 함께, 행정행위나 의사표시의 목적, 행정행위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11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① 용인시 수지구 신봉리와 성북리 일원(그 중에서 성북리 부분을 '성북지구'라 한다)에 공동주택이 가능한 취락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한 후, 1999. 9. 10.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원고를 포함한 4개의 원심 판시 선발업체들(이하 '선발업체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성북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제1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② 선발업체들은 원심 판시 후발업체들(이하 '후발업체들'이라 한다)도 위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제1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협약에서 성북지구 전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각 주택건설사업 주체의 사업면적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부담금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부담·정산하기로 정하였으며, ③ 피고가 1999. 12. 30. 원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이 사건 제1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판시와 같이 부담금 및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④ 후발업체들도 2003. 12. 29. 이 사건 제1협약과 마찬가지로 성북지구 전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각 주택건설사업 주체의 사업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부담금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부담·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북 취락지구 기반시설에 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제2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피고가 원고 등 선발업체들에게 사업승인 면적을 토대로 납부의무를 부과한 부담금 및 추가 부담금은 성북지구 전체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이 되고, 다만 원고 등 사업주체가 사업시행과정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비용 상당액을 자신이

납부한 분담금 액수와 관계없이 피고로부터 정산·환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3) 피고가 2003.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6. 3. 14. 용인시 성북동 일원 지역에 관하여 수립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이 후발업체들을 기반시설부담의무자로 하고 있지만, 위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이 사건 제2협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협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선발업체로서 이 사건 제1협약과 이 사건 부관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추가 분담금은 성북지구 전체에 설치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재원으로서 아직까지 성북지구 내에 기반시설이 모두 설치되지 아니한 이상 그 사용목적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등 참조).

나. (1) 원고는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선발업체들의 분담금으로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선발업체들이 추가로 직접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공사내역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한 후, 그 설치비용을 선발업체의 분담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분담금에서 원고의 몫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이 사건 제1협약에서 기반시설 설치분담금은 성북지구 전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대로 원고의 사업부지 면적 비율로 분담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납부된 즉시 종국적으로 귀속되며, ② 원고가 자신에게 직접 부과된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그 설치비용이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지 등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③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의한 환급을 예정하고 있는 증거가 없으며, 아직까지 성북지구 내에 기반시설이 모두 설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성북지구 내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아직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환급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를 담아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서,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을 불행사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모순되며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